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1월 2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1월16일) 상정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1월16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훈)

□ 개정이유

- 현행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 및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성적우수자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 장학금 지급 목적과 취지가 같고 시에서 출연하는 장학금임에도 이중으로 분리 운영함에 따라 이를 보완·개선하고 장학기금을 통합운영하여,
- 장학금 지급 인원 및 금액의 형평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종합석차제도(교육부 훈령 제527호)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생 자격 기준을 재적학년 성적이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에서 성적우수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조정함(안 제3조)

-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동장이 추천한 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및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동장 또는 청소년생활시설에서 보호를 받는자중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로 조정함(안 제3조제1항제5호)
- 장학생 신청기간을 매학기 개시 1월 이전에서 매학기 개시전으로 조정함(안 제4조)
- 장학생 선정시기를 학기 개시 20일이내에서 학기 개시후 20일 이내로 조정함(안 제6조제2항)

부천시장학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53호
의결연월일	2002.12.24 (제101회)

제안년월일 : 2002년 12월 16일

제 안 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장학생의 자격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는 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으므로 전체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선발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 기존 자립장학금에 명시되어 있는 수급자의 자녀 및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규정을 삽입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장학생의 자격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및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등장 또는 청소년생활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중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로 수정(안제3조 제1항5호)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수정의결

6. 수정안의 요지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5호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를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
으로서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50 이내로”로 한다.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장학생의자격) ① 1 ~ 4(생략) 5.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동장이 추천하는 자	제3조(장학생의자격) ① 1 ~ 4 (개정안과같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및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동장 또는 청소년 생활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중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	제3조(장학생의자격) ① 1 ~ 4 (개정안과같음) 5. ----- ----- -----불우한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100분의 50 이내로 -----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2년이상 거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학생으로서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학기의 성적이 재학년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p> <p>2.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의 성적이 재학년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되는 자</p> <p>3.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의 성적이 해당학과에서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p> <p>4.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학생으로서 전학기중 도단위 대회에서 3위이내의 입상 또는 전국단위 대회에서 5위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자</p> <p>5.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동장이 추천하는 자</p> <p>②(생략)</p>	<p>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장학금 신청(추천)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학생으로서 -----</p> <p>-----</p> <p>-----</p> <p>-----</p> <p>1.----- 전학기의 성적우수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p> <p>2.----- 입학 성적 또는 전학기의 성적우수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p> <p>3.----- 입학성적이 100분의 10이내인 자 또는 전학기의 학점을 100분율로 환산하여 80점이상에 해당하는 자</p> <p>4.----- 전학년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및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동장 또는 청소년 생활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중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p> <p>5.-----</p> <p>②(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장학생의 신청)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u>매학기 개시 1월이전에</u> 학교장, 교육장 또는 대학장(총장포함)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u>제3조제5호</u>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제4조(장학생의 신청)① ----- ----- <u>매학기 개시전에</u> ----- ----- ----- ②<u>제3조제1항5호</u>----- ----- <u>동장 또는 시설장의 추천으로</u> ----- -----</p>
<p>제6조(장학생의 선정)①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학기개시 20일이내에</u> 장학생을 선정한다 ②(생략)</p>	<p>제6조(장학생의 선정)①----- ----- <u>학기개시후 20일이내에</u> ----- ②(현행과 같음)</p>
<p>제11조(장학기금의 재원) 장학기금의 재원은 매년 시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한다.</p>	<p>제11조(장학기금의 재원) 장학기금의 재원은 매년 시장이 이를 예산에 편성하고 지원되는 장학금은 기금의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p>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안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장학생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2년이상 거주(“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한 학생으로서”를 “장학생은 장학금 신청(추천)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하는 학생으로서”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중 “전학기의 성적이 재학년의 100분의 10이내 해당하는 자”를 “전학기의 성적우수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의 성적이 재학년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되는자”를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의 성적우수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의 성적이 해당학과에서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입학성적이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전학기의 학점을 100분율로 환산하여 80점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전학기중”을 “전학년중”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학년중 재학년의 100분의 50이내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및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동장 또는 청소년생활시설에서 보호를 받는자중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
제4조제1항중 “매학기 개시 1월이전에”를 “매학기 개시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1항제5호”로 하며 “동장의 추천으로”를 “동장 또는 시설장의 추천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중 “학기개시 20일이내에”를 “학기개시후 20일이내에”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장학기금의 재원) 장학기금의 재원은 매년 시장이 이를 예산에 편성하고 지원되는 장학금은 기금의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조례의 장학기금에 속하는 채권과 기타 권리·의무는 부천시장학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